

제 8 편 교통안전시설공

- 제 1 장 일반사항
- 제 2 장 교통안전표지
- 제 3 장 도로표지
- 제 4 장 노면표시
- 제 5 장 첨단교통운영시설
- 제 6 장 첨단교통감시시설
- 제 7 장 방호울타리
- 제 8 장 충격흡수시설
- 제 9 장 긴급제동시설
- 제10장 시선유도시설
- 제11장 조명시설
- 제12장 미끄럼방지시설
- 제13장 노면요철포장
- 제14장 낙석방지시설

제1장 일반사항

1.1 적용범위

- (1) 이 지침서는 도로법 제 8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 중 고속국도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(2) 이 지침서는 도로법, 고속국도법, 도로교통법, 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있을 시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본 지침의 관련 내용이 개정되어야 한다.

1.2 목 적

- (1) 이 지침서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개량하는 경우, 제반 도로교통안전시설들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과 방법을 제시함으로써,
- (2) 도로 교통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며 도로의 미비한 구조상태를 보완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1.3 종 류

1.3.1 교통관리 안전시설

- (1) 교통관리 안전시설은 도로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이용자의 행동을 통제함으로써 교통 소통을 증진시키고 도로상의 안전을 보장하는 시설이다.
- (2) 그 종류로는 교통안전표지, 도로표지, 노면표시, 신호기, 첨단교통운영시설, 첨단교통감시시설, 과적차량 검문소 등이 있다.

1.3.2 차량방호 안전시설

- (1) 차량방호 안전시설은 도로 위를 주행 중인 차량이 균형 상태를 잃어 운전자 스스로 차량을 제어할 수 없는 경우 도로 주변의 위험 요소와 충돌하여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사고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다.
- (2) 그 종류로는 방호울타리, 충격흡수시설, 긴급제동시설 등이 있다.

1.3.3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

- (1)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은 도로의 선형이나 기하구조로 인해 시거가 불량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다.
- (2) 그 종류로는 시선유도시설, 조명시설 등이 있다.

1.3.4 기타 안전시설

- (1) 기타 안전시설은 시설물의 기능이 앞에서 기술한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, 차량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다.
- (2) 그 종류로는 미끄럼방지시설, 과속방지시설, 노면요철포장, 장애인안전시설, 낙석방지시설 등이 있다.

1.4 설계 공통사항

- (1) 도로에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은 통일성, 시인성,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각 시설물별 목표와 기능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에 설치한다.
- (2) 도로 이용자의 행동특성을 배려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 이용자의 관점에서 설치한다.
- (3) 각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설계시 고려사항과 설계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해양부에서 발간한 해당 시설의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.